

1986년도 제 11 회 이사회 (정기) 회의록

일 시 : 1987. 4. 14 (화)

장 소 : 학회 회의실

참 석 : 이광노회장, 신현식·박병용부회장, 박돈서총무이사, 김문한연구이사
길정천·김덕재·김진일·김택진·김형걸·김희춘·박윤성·신무성·
안영배·윤장섭·이건영·이명호·이문보·이상순·이신환·이정덕
주남철·최순철·최춘환 참여이사, 강태석·김선호·김용부·마춘경
박영기·신국범·양동양·이현호·이호진·정재철·조철호·최영규
최창근이사, 채규남·조병기감사, 김종인 대구 경북지부장
이상 40 명

1. 전회 회의록 전연 일치로 승인함.

2. 보 고 사 항

(총 무 부)

1) 학회상 수상후보자 심사위원회

일 시 : 1987. 4. 3. 18:00

장 소 : 학회 회의실

참 석 : 심사위원 (전임회장) 전원 및 현회장단

2) 지부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다음과 같이 개최

* 제 주 지 부 : 3.13. 17:00 박병용부회장 참석

* 전 북 지 부 : 3.21. 14:00 김문한 연구이사 참석

* 부산·경남지부 : 3.28. 15:00 김진일 전회장 참석

* 전 남 지 부 : 3.28. 14:00 박병용부회장 참석

공로상 : 김 하 진
 학술상 : 김진일, 임영배
 작품상 : 원 정 수
 기술상 : 박 호 창
 특별상(남파상): 주 남 철

2) 86년도 총회 의안

가. 86년도 연구 및 사업실적보고 (별첨 1)

원안대로 승인

나. 87년도 연구 및 사업계획안 (별첨 2)

원안대로 가결

다. 86년도 결산 및 87년도 예산안 (별첨 3)

원안대로 가결

라. 정관 개정안 (별첨 4)

(1) 2조 : 「회원의 지위향상」을 「건축인의 지위향상」으로

어구 수정

(2) 5조 1항 및 4항 : 약간의 어구 첨삭

3) 직원급여액 개정안, 원안대로 승인

가. 기본급 최저 8%, 최고 18% 인상

내역 : (1) 호봉승급 연 2-3%

(2) 인 상 6% (87년 공무원 수준)

(3) 상박하후

나. 정근수당 신설

기본 50%, 연 5% 가산

가산은 50%가 상한

定 款 改 正 案

條 項	現 行	改 正	事 由
第 2 條 (目 的)	本會는 建築에 관한 學問技術을 研究 練磨 하여 建築技術者의 地 位向上과 相互間의 親 睦을 圖謀하여 建築文 化發展에 寄與함을 目 的으로 한다.	本會는 建築에 관한 <u>學術</u> ・ <u>藝術</u> ・技術을 研究 練磨 하고 建築人의 地位向 上和 會員相互間의 親 睦을 圖謀함으로써 建 築文化暢達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.	語句修正
第 5 條 (事業種目)	• 제목「<u>事業種目</u>」 • 本會는 第2條의 目 的을 達成하기 위하 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. • 1. 建築에 관한 調 査 및 研究指導 • 2. 建築에 관한 會 誌 圖書・其他 印 刷物의 刊行 • 3. 建築에 관한 講 習會・講演會・懇談 會・展覽會・見學會 등의 開催	「 事 業 」 事業을 한다. 1. 建築에 관한 調査 ・<u>研究・指導 및 이에</u> <u>關聯된 事業</u> 2. 會誌・<u>論文集</u>・研究 報告書 其他 建築에 관한 圖書의 刊行 3. 左와 같음	語句修正 (1,2,4項)

條 項 (事業種目)	現 行	改 正	事 由
	• 4. 建築에 관한 計劃・監督 및 技術 檢討에 대한 國家 公共機關 其他 依 賴에 관한 事項 • 5. 國內外 관계 諸 學會와의 交流 및 會議參席 • 6. 其他 本會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項 • 7 項 없음	4. 國家・公共機關 其 他가 依賴한 建築의 計劃・設計 및 技術 檢討 5. 左와 같음 6. 前 5 個項의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<u>收益事業</u> (新設) 7. 其他 本會의 目的 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業	語句修正 6. 收益 事業新設 7. 6 項 이 7 項 으로

3) 支部監督規程 改正의 件

現 行	改 正	事 由
第 6 條 (通常資産運營) 支部通常資産中 本會에 納付하는 比率은 다음 과 같다.	第 6 條 (通常資産運營) 支部通常資産中, 本會 에 納付하는 比率은 다음과 같다.	支部通常資産의 充實化 를 圖謀함으로서 支部 活動의 活性化를 기하 고자 함. (87 년도 제 2 회 이사회 < 87. 6. 9) 결의에 의한 것임)
1. 支部所屬會員의 徵 收會費中 正會員은 會費의 50 %, 準會 員은 年 1,000 원	1. 支部所屬會員의 徵 收會費中, 正會員 은 會費의 <u>30 %</u> , 準會員은 年 1,000 원	
2. 支部所屬會員의 入 會費는 正會員, 準 會員 各 50 %	2. 支部所屬會員의 入 會費는 正會員, 準會員 各 <u>30 %</u>	
3. 支部所屬會員의 終 身會費는 50 %	3. 支部所屬會員의 終 身會費는 <u>30 %</u>	
4. 5 項 省略	4. 5 項, 現行대로함.	

4) 學會 論文集 論文掲載料에 관한 件

제 2 회 이사회에서 집행부에 연구보고토록 위임한 바 있음.
일단 금년 회기에는 현행대로 시행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검
토할 것을 제안함.

第5回 理事會(定期) 案件

議 決 事 項	議 決 番 號	理 事 1987 年 度 第 5 號
	議 決	第 5 回
	年 月 日	1987. 10. 13

提 案 者	大 韓 建 築 學 會 長
提 案 年 月 日	1987. 10. 13



3. 심의안건

1) 정관개정

금년도 총회에서 가결되었으나 건설부에서 승인을 보류하고 수정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사회를 거쳐 추계학술발표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, 재상정할 것임.

수정내용: 제 5 조 6 항에 「前 5 個項의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收益事業」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나 法的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를 신설하지 않기로 함.

2) 추계체육대회 개최

시 기: 11월초

방 법: 1 안 — 체육대회 (테니스, 족구, 소프트볼, 바둑, 장기)

2 안 — 바둑·테니스대회 (종전대로)

3 안 — 등산대회

3) 신입회원자 (김우영외 44명) 승인 (명단 별첨)

4) 기타사항